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71

발의연월일: 2023. 3. 29.

발 의 자:김영주·김승남·김종민

임호선 • 박용진 • 정태호

조오섭 · 최기상 · 홍익표

이인영 · 임종성 · 용혜인

남인순 · 전해철 · 김정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위성이 추락하였고 해당 추락물이 한반도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 정부는 국민들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여 재난대응을 당부한 사건이 있었음. 각국이 우주 개발에속도를 붙이며 위성・로켓 잔해물 등이 추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인해 대도시 등에 추락물이 떨어질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소행성·유성체 등에 의한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의 경우 추락·충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

체계의 법적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에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소행성·유성체 등"을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미세먼지 등으로"를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	1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	가
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	
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	
수(潮水), 화산활동, <u>소행성</u>	<u></u> 「우주개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	<u>발 진흥법」에 따른</u>
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	나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	
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
-
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
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